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 기피 관련 범죄 공소시효 폐지 >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28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2.
3. 회부연월일 : 2025. 7. 2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병역 기피는 헌법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8조).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병역법」 제86조 위반 등 병역 기피 관련한 죄를 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신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u>&lt;신 설&gt;</u> | <p>제98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의 죄</li> <li>2.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의 죄</li> <li>3. 제88조(입영의 기피 등)의 죄</li> <li>4.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의 죄</li> <li>5.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의 죄</li> <li>6.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의 죄</li> </ol> |

| 현행 | 개정안                                                                              |
|----|----------------------------------------------------------------------------------|
|    | <p>7.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의 죄</p> <p>8.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의 죄</p> |

□ 「병역법」은 병역 의무 기피 목적의 도망 또는 신체 손상, 병역 판정검사의 기피, 입영 기피, 허위 서류의 제출, 대리 복무 등 병역 이행과 관련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sup>

□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병역 기피 범죄는 헌법 등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현행 실정법상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은 내란·외환 등 헌정 질서 파괴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병역 의무 위반 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범죄의 실태와 제재 강화의 필요성·실효성을 비롯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1) <참고자료1> 개정안 공소시효 특례 적용 조항별 처벌내용 및 공소시효 기간 참조

## ＜공소시효 적용 배제 입법례＞

| 법률명(개정일)                              | 대 상 범 죄                                                  |
|---------------------------------------|----------------------------------------------------------|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95.12.29.) | 내란·외환·이적죄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상 집단살해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11.17.)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2.2.1.)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죄 |
| 형사소송법('15.7.31.)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 ☐ 국방부와 병무청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병역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는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 법무부는 범죄 유형, 경중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성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

## <참고자료>

### ■ 개정안 공소시효 특례 적용 조항별 처벌내용 및 공소시효 기간

| 구 분                          | 내 용                                                                                                                                       | 형량                                          | 공소<br>시효 |
|------------------------------|-------------------------------------------------------------------------------------------------------------------------------------------|---------------------------------------------|----------|
| 제86조(도망·신체<br>손상 등)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1년 이상 5년<br>이하 징역                           | 7년       |
| 제87조(병역판정<br>검사의 기피 등)       |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 1년 이상 3년<br>이하 징역                           | 5년       |
|                              |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 6개월 이하<br>징역                                | 5년       |
| 제88조(입영의<br>기피 등)            |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 5년       |
|                              |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 6개월 이하의<br>징역이나<br>500만원<br>이하의 벌금<br>또는 구류 | 5년       |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                                                                              | 1년 이상 3년<br>이하의 징역                          | 5년       |
|                              |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                                                                                     | 1년 이하의<br>징역                                | 5년       |
| 제88조의2(대체<br>역 편입의 허위)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 1년 이상<br>5년 이하의<br>징역                       | 7년       |
| 제89조(사회복무<br>요원 등의 대리<br>복무)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                                                                                           | 1년 이상 3년<br>이하의 징역                          | 5년       |

| 구 분                           | 내 용                                                                                                                                                                   | 형 량                                     | 공 소 시 효 |
|-------------------------------|-----------------------------------------------------------------------------------------------------------------------------------------------------------------------|-----------------------------------------|---------|
|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br>-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10년     |
|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 ① 공무원·의사·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br>-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10년     |
|                               | ②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br>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 ① 고용주가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